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51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외국국적 동포 현황	5
3. 개정안의 검토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장동혁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2025. 3. 21.
3. 회 부 일: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인 2025년 1월 262만여 명이고, 외국국적동포는 89만여 명으로 외국인 3명 중 1명은 동포일 정도로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9년 12월 10만여 명에서 현재 9배 급증하였음.

또한, 2019년 7월 재외동포의 인정 범위가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동포로 확대되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수 청년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률서 준수 교육, 조기적응, 사회통합,
체류·영주·국적 취득 지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요건을 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사회통합·조기적응 및 체류자격·영주·국적 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범위, 지정취소 및 청문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6조의2(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사회통합·조기적응 및 체류자격·영주·국적 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u>

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 조기적응프로
그램 지원 사업

2.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
류자격·영주·국적 취득 등
법적 지위 향상 지원

3.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문화·홍보 사업·
통역 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법무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
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외국국적동포 현황

현행법상 재외동포는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재외국민”과, ②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이른바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함.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지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에서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이나 재입국에 있어서 체류기간에 혜택이 부여되며, 부동산거래 및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한, 현행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하고 있음.²⁾³⁾

외국국적동포는 2025년 6월 현재 86만 5,020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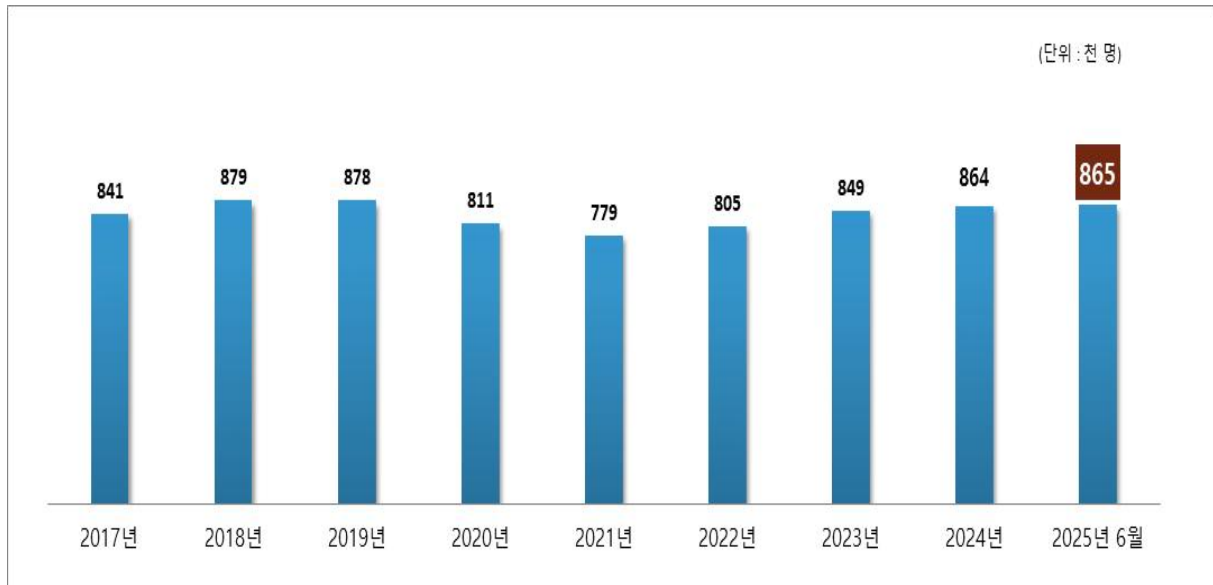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3)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자격 4가지 종류로는, ①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60세 미만의 동포에게 발급하는 “단기방문(C-3-8)”, ②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의 18세 이상 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 ③ 과거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동포(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재외동포(F-4)”, ④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자격에서 근무·소득·체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에게 발급하는 “동포영주(F-5)”가 있음.

66만 8,771명, 미국 5만 3,512명, 우즈베키스탄 4만 2,046명 순이고,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가 55만 4,895명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외국국적동포 연도별 추이 】



【 외국국적동포 국적별 체류현황 】

(2025.6.30. 현재, 단위 : 명)

계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865,020	668,771	53,512	42,046	37,805	18,185	22,168
	호 주	키르기즈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기 타
	5,876	4,088	3,191	513	580	8,285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

(2025.6.30. 현재, 단위 : 명)

계 \ 자격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영주 (F-5)	방문동거 (F-1)	기 타
865,020	554,895	89,225	155,680	22,443	42,777

※ 자료: 법무부 통계월보(25.6.)

3. 개정안의 검토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 정착 및 적응을 지원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 등을 규정하는 법률안임. 동 센터는 현행 규정상 사회통합프로그램,⁴⁾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체류자격·영주·국적 취득 등 법적 지위 향상 및 관련 상담, 그리고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사업·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임.

법무부는 내부지침인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밀집지역의 비영리단체 4곳⁵⁾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 정착 및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음. 2023년까지 총 16개 단체로 확대 지정한 이후, 현재는 15개소를 운영중에 있음.

【 동포체류지원센터 연혁 및 현황 】

○ 연 혁

- ('08.7.)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 4)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서울) 한중사랑교회, 한중교류협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안산) 안산조선족교회

수도권 동포밀집 지역 내 4개 단체 지정

※ (서울) 한중사랑교회, 한중교류협회, 귀환동포연합총회, (안산) 안산조선족교회

- ('10.7.) 운영실적 미흡 1개 단체(귀환동포회) 제외, 3개 단체 재지정

- ('12.10.~'19.5.) 기존 3개 단체 지정·운영

- ('19.6.) 기존단체 2개 포함 7개 단체로 확대 지정·운영

- ('21.6.) 기존단체 6개 포함 11개 단체로 확대 지정·운영

- ('23.6.) 기존단체 8개 포함 16개 단체로 확대 지정·운영

○ 운영 현황

(서울)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인천)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부천) 경기글로벌센터, (안산) 너머,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당진) 반딧불나눔복지재단, (광주) 고려인마을, 이주민종합지원센터, (대전) 대전다문화센터, (경주)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경주 YMCA, 하이웃이주민센터, (울산) 울산외국인센터, (김해) 글로벌드림다문화연구소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24. 1. 1.부터 미운영

※ 자료: 법무부

그러나,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내부지침인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면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정착 및 사회적응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이처럼 개정안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률에서 직접 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안정적 정착과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다만, 다음의 사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가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권한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⁶⁾ 또한, 재외동포청은 「정부조직법」과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와 관련된 전반적 사무를 관장하는바,⁷⁾ 주로 현행법상 국외에 체류·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정

6)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정부조직법」 제33조(외교부)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재외동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바.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사.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

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

자.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특히,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15개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재외동포청은 “국내 동포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동포 관련 단체 선정 및 지원과 지자체를 활용한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음.⁸⁾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관 간 업무 이원화의 심화요인은 없는지,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안의 적절성 및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

또한, 개정안 제16조의2제2항제3호는 센터 업무 중 외국국적동포 대상인 “교육·문화·홍보 사업·통역 지원 업무 등”을 규정하는바, 법무부가 센터 지정을 통해 교육·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센터 지정과 수행 사업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끝으로,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현재 내부지침으로 이미 운영 중인 센터의 경우 지정 간주를 위한 적용례 등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재외동포청은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에는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690백만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355백만원),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51백만원),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등 총 10억 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집행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음.

9) 참고로, 재외동포청은 동 개정안에 대해 재외동포 정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체류 동포 지원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 】

연 번	단 체 명	소 재 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11)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7)	비 고
1	경상북도고려인 통합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	○	재지정
2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광주 광산구	○	○	"
3	사단법인 너머	경기 안산시	-	-	"
4	대전다문화센터	대전 유성구	○	-	"
5	서울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	○	"
6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경기 안산시	○	○	"
7	한중사랑교회	경기 부천시	-	-	"
8	한국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용노동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24. 1. 1.부터 미운영	서울 구로구	-	-	미운영
9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경기 부천시	○	○	신규 지정
10	경주YMCA	경북 경주시	○	-	"
11	사단법인 글로벌드림 다문화연구소	경남 김해시	○	○	"
12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인천 연수구	○	-	"
13	사단법인 반딧불 나눔복지재단	충남 당진시	-	-	"
14	사단법인 울산외국인센터	울산 북구	○	○	"
15	이주민종합지원센터	광주 광산구	-	-	"
16	하이웃이주민센터	경북 경주시	○	-	"

※ 자료: 법무부(2025.9. 현재)

문 의 처

02)6788-5057